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피로연 행사 허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: 피로연 행사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

나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
다. 처분기간 : '21. 10. 13.(수) 0시 ~ 별도 공지일까지

라. 처분내용 : 피로연 행사를 아래와 같이 허용하되 방역수칙[붙임] 적용

- 식사 제공시 : 최대 49명(16명 + 접종완료자 33명)까지 가능

- 식사 미제공시 : 최대 99명까지 가능

마. 처분사유 : 관내 코로나19 감염확산 추이 및 지역 내 특수성 고려

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(300만원 이하), 제83조제2항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전라남도지사



불임1**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('21. 10. 13.)****【 피로연 핵심 방역수칙(안) 】**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방역관리자 특별 지정 | ② 식당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|
| ③ 술잔, 식기 등은 개인별 사용하기 | ④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 |
| ⑤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(30분 이내) | |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공통 수칙	<p>① 방역수칙 준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-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 준수
	<p>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
	<p>③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■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
	<p>④ 마스크 착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	<p>⑤ 손씻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손 씻기, 손 소독하기(권고) -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, 손소독하기(권고)
	<p>⑥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유지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당 등 부대시설의 경우 해당 방역수칙을 적용하되, 대기자 등 밀집되지 않도록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<p>(7) 환기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기시간 계시(권고) * 지하,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	
	<p>(8) 소독하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 1회 이상 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	
	<p>(9) 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	
추가 수칙	<p>(1) 뷔페, 식당 이용 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방역수칙에 따라 안내된 좌석에 착석하기 ■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가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사 시 대화 자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사 시 대화 자제
	<p>(2) 만남 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안내 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화 시 마스크 착용 ■ 지인 간 신체 접촉(악수 등) 자제
	<p>(3) 시설 내 공용 장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흡연실, 화장실,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